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2. 18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2월 3일

나. 발 의 자: 임헌호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2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2. 1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임헌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자료로 변경(안 제2조)
-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(별지 제1호 서식)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징수법」과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전임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 “결손처분”이 “정리보류”로 용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.
-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「지방세기본법」 “가산금” 및 “증가산금”이 “납부지연가산세”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용어를 정비함.
- 지방세 결손처분 제도의 개선은 “결손처분”을 “정리보류”와 “시효완성 정리”로 구분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“시효완성 정리”를 하도록 하고,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정리보류”를 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한 것임.
- 납세의무를 소멸시킨다는 “결손처분”의 사전적 의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해당 개정 사항 반영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.
- 또한,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 사항은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“납부불성실가산세”와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“가산금”을 “납부지연가산세”로 통합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상기 법령의 개정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를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아직 별지 서식 용어 정비(가산금→납부지연가산세)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선제적인 자치법규 개정이라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헌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73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2. .

발 의 자 : 임헌호, 우경란, 신흥식
최봉희, 양송이 의원
(5인)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자료로 변경(안 제2조)
- 나.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(별지 제1호 서식)
- 다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
「지방세법」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법**”를 “**법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
“**위원회**”를 “**위원회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 중 “**결손자료**”를
“**정리보류 자료**”로 한다.

제5조제9항 중 “**정한다.**」”를 “**정한다.**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지급대상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	제2조(지급대상) ① ----- ----- “법”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“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”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,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자를 말한다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“위원회”----- ----- ----- -----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“특별한 공적”이란 다음	⑤ ----- -----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
경우를 말한다.

1. (생 략)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
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
경우

가. (생 략)

나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조에
따른 체납 또는 결손자료
의 제공

다. ~ 자. (생 략)

⑥·⑦ (생 략)

제5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
구성 등) ① ~ ⑧ (생 략)

⑨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
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
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
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
다.」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-----
----- 정리보류
자료--

다. ~ 자. (현행과 같음)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
구성 등) ① ~ ⑧ (현행과 같
음)

⑨ -----

----- 정한다.

〈별지 제1호 서식〉

포상금 지급신청서

신 청 자			징수(세원 발굴)액				청구액 (원)	거래은행 계좌번호	비 고
소속(주소)	성 명	생년월일	건수	합계	본세	납부지연 가산세			

신문용지 54g/m²
190mm×268mm

※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